

[]시정명령 등 조치

[]개선명령

[]조치명령

이행완료 통보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
		15일. 다만, 「지하수법 시행규칙」 제22조제1항의 경우에는 10일

통보인	성명(법인명)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
	주소(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) (전화번호:)	

통보 내용	시설명
	이행완료 내용
	이행완료일

시공업체	업체명(주소)	대표자 성명(전화번호)
------	---------	--------------

[] 「지하수법」 제8조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

[] 「지하수법」 제9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

[] 「지하수법」 제9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1항

[] 「지하수법」 제9조의2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4항

[] 「지하수법」 제10조제3항 본문,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

[] 「지하수법」 제13조제1항·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

에 따라 이행사항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
통보인

(서명 또는 인)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

첨부서류	1. 시정명령 등 조치,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. 현장사진(「지하수법」 제9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1항에 따른 개선명령과 「지하수법」 제9조의2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완료를 통보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이 통보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